

학 칙

목 차

제 2 장 대학원

1. 대학원학칙
2.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3. 외국인학생전형에 관한 규정
4. 등록및학적에 관한 규정
5. 수업및학점에 관한 규정
6.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7.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8.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9.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10. 공개강좌및연구생에 관한 규정
11. 학생지도에 관한 규정
12. 장학금에 관한 규정
13. 학과(전공)장에 관한 규정
14. 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15. 대학원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16. 대학원생권리장전

대학원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이념과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인 진·의·신·봉 정신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및 교육목적)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편제 및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편제

가. 일반대학원

나. 특수대학원 : 문화관광복지대학원<개정 2011.3.1, 2012.11.6., 2013.11.18>

2. 교육목적

가. 일반대학원 : 학문의 깊은 이론과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교수·연구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창의적·지도적·봉사적 인격체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

나. 문화관광복지대학원 : 문화, 관광 및 복지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및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론 및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문화·관광·복지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6., 2013.1.1, 2013.11.18>

다. <삭제 2011.3.1>

제3조(학위과정)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조(학과의 설치 및 폐지) ①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경주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09.9.1>

②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1>

제2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외국인 학생 등 정원 외 입학자의 지원자격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8조(입학제한) <삭제 2015.11.23>

제9조(입학전형) ①신(편)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1>

②입학허가는 대학원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③모집시기, 전형방법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외국인 학생 등 정원 외 입학자의 전형방법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각 학위과정의 당해 학과 또는 전공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②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편입학) ①각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전형을 거쳐 학과 또는 전공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유사과목의 학점 인정은 학과(전공)장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승인하되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학적

제12조(등록) ①학생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수업연한 이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③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휴학 및 복학)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과 출산 및 육아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2.20.>

②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복학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휴학 및 복학 등 학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징계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4장 수업 · 재학연한, 수업, 시험 및 성적, 학점, 전공, 수료

제1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수업연한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모두 4학기로 하며,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5학기로 한다.

②재학연한은 수업연한 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기간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4년, 박사학위과정 7년, 특수대학원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1>

③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 재적기간을 통산한다.

④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입 전 재학기간을 통산한다.

⑤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업 및 휴업) ①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휴업일은 동 · 하계 방학,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이며 임시휴업일 지정 및 방학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수업방법) 일반대학원은 주간수업을, 특수대학원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생의 전원 동의 등 학사운영상 소속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 · 야간 수업을 병행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실습, 실기 및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수강신청) ①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되 전공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한다.

②수강 승인을 얻은 과목은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수강신청자가 일정 수 이하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21조(시험 및 성적) ①시험은 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행할 수도 있다.

②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과목의 성질에 따라 실기, 실습, 구술, 과제물 및 세미나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C	70 ~ 74	2.0
A	90 ~ 94	4.0	F	0 ~ 69	0.0
B ⁺	85 ~ 89	3.5	S	70점 이상	0.0
B	80 ~ 84	3.0	U	69점 이하	0.0
C ⁺	75 ~ 79	2.5			

④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와 시험 및 출석상황 등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⑤과목별 성적등급은 C (70점)이상을 급제로 하며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매 학기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수강교과목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6.3.1.>

제22조(학점교류) ①각 대학원에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국내·외 협력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교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수료학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23조(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 본 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총 6학점까지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전공 결정 및 변경) ①전공을 결정하여 2학기초 1개월 이내에 전공희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공 변경은 1회에 한하되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수료학점) ①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수료학점 외 학위취득(논문 미제출 졸업자 제외)을 위해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6조(수료) ①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상기 제25조 제1항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는 수료자로 인정한다.

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학위과정별 수료 인정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운영

제27조(교육과정)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교과목담당교수)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1>

②교과목 특성상 자격자를 구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의 학과목일 경우에는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0.3.1>

③상기 ②항의 경우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추천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자격미달 시 또는 특별사유가 있는 자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

제29조(논문지도교수) ①석사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0.3.1>

②상기 ①항 이외의 자로서 논문을 제출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학계의 권위자인 경우에는 학과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0.3.1>

③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09.9.1, 2010.3.1>

제6장 자격시험 및 학위논문제출

제30조(자격시험) ①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3.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한 자
4.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②학위논문제출은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 또는 수료자에 한한다. 단, 박사학위의 경우는 박사학위 청구 논문제출 이전에 일반 학술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주 저자이거나 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 이내의 연구 논문에 한한다.<개정 2011. 3. 1>

제32조(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①학위논문은 지도교수 선정, 논문계획서 제출, 공개발표,

논문심사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관광복지대학원의 특수한 성격을 갖는 학과(전공)는 졸업작품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1.1. 2013.11.18>

③학위논문심사는 박사학위과정 5명, 석사학위과정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학위청구논문(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제7장 학위수여

제33조(학위수여) ①일반대학원 :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특수대학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24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2.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3.0)이상인 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6.3.1>

③각 대학원 석·박사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행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비논문학위 수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논문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학위수여 시기는 연 2회로 하되 명예박사학위수여는 정규학위 수여일 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⑤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명예박사학위) ①국내·외적으로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와 지역 사회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또는 산업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본 대학교 대학원의 학술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수여받는 자의 공헌 및 공적에 따라 별도의 학위종별로 수여할 수 있으며 서식은 [별지 제5호]로 행한다. <개정 2007.3.1>

제35조(학위수여취소) 총장은 석사, 박사 또는 명예박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논문 대필, 표절, 실험 대행, 금품 제공 등)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1>

제36조(학위복장) ①대학원별 학위종별 후드 색깔은 [별표 3]과 같다.

②후드 내부의 색깔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신설 2007.3.1>

③학사모 수술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신설 2007.3.1>

④박사학위복 앞단 및 소매의 색상은 후드 색깔과 동일하게 한다. <신설 2007.3.1>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7조(공개강좌) ①공개강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장이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연구생 및 특별연구생) ①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과정의 연구생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사학위과정의 특별연구생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의 선발절차,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의 서식으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0조(학생지도) 교육, 연구, 논문 등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41조(학생 활동 및 의무) ①능동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원우) 회칙에 따르되 회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생은 대학원 학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 및 징계) ①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장학금) ①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②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4조(직제) ①각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을 둔다.

②각 대학원 학과 및 전공에는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그 학과 및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③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교 교원 중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3.1>

제45조(대학원위원회) ①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수대학원장과 발전기획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9.1, 2013.1.1., 2013.3.1>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6조(대학원위원회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
5.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07.3.1>

제47조(대학원위원회 회의) ①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4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1>

제11장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48조(제정 및 개폐) ①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총장이 한다. <개정 2009.9.1>

②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규정 중 변경된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 없이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9.1>

제49조(학칙의 개정) ①학칙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구성원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9.1>

②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단, 입학 총정원의 변경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신설 2009.9.1>

제50조(보고) <삭제 2012.1.22>

제12장 대학원 자체평가

제51조(자체평가의 실시)①본 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17.2.20>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본 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2.20.>

③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2.20>

제13장 보 칙

제52조(준용) 이 학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9.1., 2017.2.20 >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산업경영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전조의 폐지 학칙에 따라 각 대학원 재학생은 이 학칙을 적용하되 제43조에 한하여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1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3년 8월 31일까지의 휴학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이 학칙 제33조 제2항 제2호는 2006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대학원 소속이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동학과(환경조경학과, 언론광고학과, 건설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영상예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변경된 영상예술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0.3.1>
- ②(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2010.3.1>
 - 1.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언론광고학과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2.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어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도시공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와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2.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관광조경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영어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31조 제2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부동산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11.6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경영학과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호텔외식경영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 건설공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11.18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대학원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문화예술관광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학과(전공) 및 재적생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문화관광복지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문화예술관광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예술디자인학과의 재적생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문화산업예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문화예술관광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관광산업학과의 재적생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관광외식산업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학위종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문화예술관광대학원 관광산업학과, 산업경영대학원 호텔외식경영학과에 소속되어 있던 재적생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졸업시 관광학석사를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6.3.1부터 시행한다.

②(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1. 문화관광복지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전공 재적생은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대학원학칙 2-2-1~12

2. 문화관광복지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전공 재적생은 문화예술학과 실용음악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표<개정 2006.3.1, 2007.3.1, 2010.3.1, 2011.3.1, 2012.1.1. 2012.11.6., 2013.11.18., 2015.11.23., 2016.3.1., 2016.5.30>

2016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1)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석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5명
		자연계	간호학과		10명
문화관광복지 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2016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석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0명
		공학계	에너지융복합서 비스학과		5명
		자연계	간호학과		10명
문화관광복지 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 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2015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석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7명
		공 학 계	에너지융복합서비스학과		8명
문화관광복지대학원	석사	예 체 능 계	문화산업예술학과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전공 문화예술콘텐츠학전공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2014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정원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7명
	석사	인문·사회계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37명
		공 학 계	에너지융복합서비스학과		8명
문화관광복지대학원	석사	예 체 능 계	문화산업예술학과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전공 문화예술콘텐츠학전공	25명
		인문·사회계	관광외식산업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학과		

【별표2】〈개정 2006.3.1, 2007.3.1, 2010.3.1, 2011.3.1, 2012.01.01., 2013.1.1., 2013.11.18., 2015.11.23., 2016.3.1., 2016.5.30〉

학위종별 및 해당학과(전공)

대학원	학위종별	학 과	전 공
일반대학원	관 광 학 박 사 문 학 박 사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관 광 학 석 사 문 학 석 사 간 호 학 석 사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간호학과	
문화관광복지대 학 원	예 술 학 석 사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관 광 학 석 사	관광외식산업학과 문화재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사 회 복 지 학 석 사	사회복지학과	

【별표3】〈개정 2006.3.1, 2007.3.1, 2010.3.1, 2011.3.1, 2012.01.01., 2013.1.1., 2013.11.18., 2015.11.23., 2016.3.1., 2016.5.30〉

학위종별 후드 색깔

대 학 원	해당 학위	후드색깔	해당학과	해당전공
일반대 학원	관광학박사 문 학 박사	밝은파란색 흰 색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관광학석사 문 학 석사 간호학석사	밝은파란색 흰 색 노 란 색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간호학과	
	예술학 석사	보 라 색	문화예술학과	
문 화 관 광 복 지 대 학 원	관광학 석사	밝은파란색	관광외식산업학과	문화예술기획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자 주 색	사회복지학과	여행항공컨벤션학전공 호텔외식사업학전공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별지 제2호 서식】 학술학위(석사)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명 :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경주대학교 총 장 ○○박사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 (석)

【별지 제3호 서식】 전문학위(석사)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명 :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경주대학교 총 장 ○○박사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 (석)

【별지 제4호 서식】 학술학위(박사)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
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에 통과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
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명 :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경주대학교 총 장 ○○박사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 (박)

【별지 제5호 서식】 명예박사학위 <개정 2007.3.1>

명박 제 호

학 위 기

본(국)적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_____

_____에 크게 공헌을 하였으므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경주대학교 총 장 ○○박사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주대 (명박)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_____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직인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조 제3항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전형시기) 입학전형은 년1회 또는 2회에 걸쳐 매 학기 개시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06.3.1〉

제3조(입학전형공고)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형실시 전에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전형구분) 입학전형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

제5조(지원자격) 각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삭제 2013.1.1〉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가.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단, 군인은 영관급 장교) 〈개정 2006.3.1〉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소의 연구원

라.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마. 관련 업체의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개정 2006.3.1〉

바. 대학원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4. 연구과정 및 특별 연구과정

가.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석사학위과정과 같다.

나. 특별연구과정은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박사학위 과정과 같다.

제6조(전형요소) 입학전형의 전형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학위과정, 계열 및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를 반영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전형 〈개정 2009.8.1〉

가. 필답고사(전공, 외국어 등)

나. 전적 대학(원) 성적

- 다. 면접고사
- 라. 실기고사
- 2. 특별전형
 - 가. 전적 대학(원) 성적
 - 나. 면접고사
- 3.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
 - 가. 전적 대학(원) 성적
 - 나. 면접고사

제7조(제출서류)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나.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나.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다.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 3. 연구과정 및 특별 연구과정
 - 가.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함.
 - 나. 특별 연구과정은 박사학위과정과 동일함.

제8조(전형료)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출제 및 채점위원) 각 대학원장은 입학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위하여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출제 및 채점위원을 위촉한다.

제10조(합격자 사정) 합격자 사정은 입학전형 결과를 근거로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11조(편입학) ①편입학전형은 신입학전형과 동시에 시행하되 시행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상 수료하고 일반대학원은 6학점 이상, 특수대학원은 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편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편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2. 타 대학원 재학(수료)증명서 1부.
- 3.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4. 기타 필요한 서류

④편입학전형은 신입학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2조(재입학) ①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②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재학 시 학업성과 품행 등을 심사한 소속 학과(전공)장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입학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서류의 보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입학관련 서류는 학위 취득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학생전형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조 제4항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북한 이탈 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개정 2008.3.1>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조(지원자격)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3. 상기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자(단, 졸업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또는 국내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개정 2008.3.1., 2013.9.1.>

제4조(입학시기) 외국인 학생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국내학생의 입학시기와 동일하다.

제5조(입학지원서류) ①외국인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국적 및 대상자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3.1>

②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3,4호 및 기타 요구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08.3.1>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석사학위과정 지원자)
3.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
4.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
5. 학생, 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중국인: 호구부 해당)<개정 2009.5.1>
6.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 1부
7. 부모 및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 각 1부 <개정 2008.3.1>
8. 한국어능력시험 증빙자료 1부 <신설 2008.3.1><개정 2009.5.1>
9. 본교 재학 최종학년 지도교수의 추천서 및 재직증명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1만불 이상 예금,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예치)<개정 2009.5.1>
10.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신설 2008.3.1><개정 2009.5.1>
11. 재정보증인의 수입증명서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서 1부 <신설 2008.3.1><개정 2009.5.1>
12. 생활비 조달 계획서(소정양식) 1부 <신설 2008.3.1><개정 2009.5.1>

13. 기타 필요한 서류<개정 2009.5.1>

③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하는 직후학기에 지원하는 자는

②항의 1, 2, 3, 4, 6, 9, 13호의 서류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5.1>

제6조(입학전형)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반영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면접고사

3. 한국어시험

제7조(학칙준수) 외국인으로 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의 학칙과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및학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장 등록 및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등록이라 함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정규등록, 학점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②정규등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학점등록은 수업 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수료학점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청한 학점 또는 수료자가 비논문학위취득을 위하여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학점이 3학점 이하이면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이면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는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3.1, 2008.3.1>

제3조(수업료 인정) ①미등록 휴학자는 복학학기의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료를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수업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학기의 수업료를 대체 인정한다.

1.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수업료 전액으로 인정한다.
2.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한 날로부터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대체 인정한다.
3.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복학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업료를 납부하고 총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

제4조(수업료 반환)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8.3.1, 2012.6.1>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2.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3.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8.3.1>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휴학) ①질병,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

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병역 의무 복무기간과 4주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사고 및 천재지변을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8.3.1>

③계속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 연기 1회는 휴학 1회로 한다.

④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6.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9조(재입학) ①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자퇴 및 제적이전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자퇴 및 제적이전의 횟수에 포함한다.

제10조(편입학) ①편입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편입 전 재학기간을 통산한다.

②편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편입학 전의 횟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학적관리) ①학적은 전산으로 관리하되 교학과 책임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열람, 복사, 수정, 삭제 할 수 없다. <신설 2006.3.1>

②학적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무 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 및 오기일 때는 신고로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제12조(증명서발급) ①증명서 발급 대상은 각 대학원 및 공개강좌 재학생, 졸업생과 제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6.3.1>

②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06.3.1>

1. 재학증명서 :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2. 재적증명서 : 각 대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수료증명서 : 각 대학원의 수료 인정 학점을 취득한 자
4. 학위수여증명서 : 각 대학원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5.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각 대학원의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 예정인 자
6. 휴학증명서 : 각 대학원에서 휴학 중인 자
7. 성적증명서 : 각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8. 장학금 수혜/비수혜 증명서 : 장학금 수혜/비수혜 사실이 있는 자
9. 교육비납입증명서 : 각 대학원 및 공개강좌 등록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자
③전 항의 제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3.1>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등록및학적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이 규정 제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3년 8월 31일까지의 휴학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특수대학원 수료자 중 학위논문 대신 학점취득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이 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등록및학적에관한규정 2-2-4~4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장 수업·재학연한, 수업, 시험 및 성적, 학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 수업은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3조(수강신청) ①등록을 마친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웹학사서비스에 접속하여 교과목담당교수가 게시한 강의계획서를 참고하고 학과(전공)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매 학기 전공과목의 취득기준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과목, 보충과목 및 논문지도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 후 1주일 이내 수강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④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허가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조(폐강) 인접차학기의 재학생과 공동으로 수강할 수 있되 수강생이 2명 이하인 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제5조(강의) ①강의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학기 강의방법, 평가방법 및 강의 진행 등이 명시된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전에 웹학사서비스에 접속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8.1>

제6조(시험) 시험은 정기적으로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7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세미나, 실기 등 수업 기여도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출석 성적은 20%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명 이상은 B+ 이하의 성적을 주어야 한다. 단, 수강생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3.1>

③각 과목의 성적은 C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하되 A+, A, B+, B, C+, C, F 등급으로 표시하고 보충과목 및 논문지도 과목은 S(통과), U(낙제)로 표시한다. <신설 2006.3.1>

제8조(성적공시 및 정정)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성적평가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 신청을 받은 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하여 성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시험답안지, 과제보고서, 실습보고서 등 성적 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포기) ①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 포기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포기한 성적도 장학사정에는 반영한다.

제10조(휴·결강 및 보강) ①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 또는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전 승인 없이 휴강 또는 결강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즉시 보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학점)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학점인정일수) 타당한 사유가 없이 한 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논문지도 학점) ①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제출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으로 논문지도 교수가 부과하는 학점이다.

②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은 3·4학기 특수대학원은 4학기에 논문지도 학점을 신청하여야 하며 석사 1학점, 박사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료학점 이수자) ①석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②박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제15조(편입생의 학점인정) ①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의 학점 인정은 학과(전공)장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승인하되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제16조(재학생의 학점인정)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제17조(학부생의 학점 인정) ①본교 학부생이 석사학위과정의 개설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그 취득학점을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전 항의 취득학점은 B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상호 이수학점인정)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 8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휴학자의 성적인정) 휴학자의 성적인정은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한 후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성적이나 수

시시험 등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출석부 관리) 출석부는 교과목담당교수가 관리하고 출결상황은 매 시간 담당교수가 확인 및 표시하여야 하며 학기 종료 후 성적평가결과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장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목 및 학점) ①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공과목 : 전공학문의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2. 선택과목 : 전공과목 외에 타학과(전공)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
3. 보충과목 : 비동일계 출신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4. 논문지도과목 : 학위논문제출을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②과목당 1학기 학점수는 일반대학원 3학점, [문화관광복지대학원](#)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 [2013.11.18](#)>

제3조(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①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개편된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 없이 각 대학원장이 개편할 수 있다.

②대학원별, 학위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기준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80 ~ 100학점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60 ~ 80학점
3. [문화관광복지대학원](#) : 60 ~ 80학점(단, [관광외식산업학과](#)는 80 ~ 100학점)<개정 2013.1.1.,[2013.11.18](#)>
4. <삭제 2013.1.1.>

제4조(교과목 설정) 교과목은 국제적 학문수준에 맞는 각 과정의 학문수준과 해당 학과(전공)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과목 개설) ①교과목은 매 학기마다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제출한 교과목개설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각 대학원장이 개설하거나 또는 각 대학원장이 직접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8.1>

②학생들에게 수강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취득기준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되 매 학기 개설 과목 수(학점)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1>

제6조(보충과목 이수) ①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비동일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전공)장이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하되 매 학기 신·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보충과목은 학과(전공) 내규로 정한 과목(8과목 이상)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되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7조(보충과목 지정) 보충과목은 학과(전공)장이 매 학기 수강신청전에 내규로 정한 과목 중에서 지정하되 지정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교과목 담당교수) 강의, 실험 및 실기를 담당할 교수의 자격은 본교 전임 교원과 위촉된 시간강사로 한다.

제9조(담당과목 제한) 동일교수가 한 학기당 담당하는 과목수는 1과목(논문지도과목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강사의 위촉) ①교과운영상 시간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학칙 제28조에서 정하는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강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장은 시간표 작성 이전에 시간강사를 추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주당 2과목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간강사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2. 소속 기관(단체)자의 출강승인서(해당자)
3. 이력서
4. 학력증명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6. 주민등록 등본

④위촉되었던 시간강사는 전항 제1, 2호의 서류만 제출하되 나머지 제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제11조(담당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목담당교수(시간강사 포함)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학과(전공)장은 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교과목담당교수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운영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7조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0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자격시험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자격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종합시험 :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제4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학과(전공)장이 다른 외국어(한문포함)를 선택할 수 있으나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2. 종합시험 : 종합시험과목은 매 학기 학과(전공) 교수회의로 결정한 과목(박사:6과목, 석사:4과목)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되,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9.8.1>

제5조(시기 및 관리) ①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 및 9월 중에 실시한다.

②종합시험은 매년 4월 및 10월 중에 실시한다.

③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과목별 배점 및 과락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과목당 60분을 원칙으로 하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얻은 자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다만, 외국어시험에서 영어 교육전공 학생은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7조(합격인정) 영어시험 대상자 중 TOEFL 490점(CBT163점) 또는 TOEIC 700점 이상 취득한 자와 한국어시험 대상자(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9.8.1>

제8조(출제 및 채점위원 위촉) ①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 교원에게 출제를 위촉할 수 있다.

②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지정된 과목담당교수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전형료)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시험) 자격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은 동일과목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졸업논집 제출자격) ① 학위과정별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과정

- 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4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비동일계 출신자는 보충과목 9학점 이상 추가 이수자) <개정 2009.8.1>
- 나. 전학기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 다. 논문지도 학점(2학점)을 취득한 자
- 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 바. 박사학위 청구 논문제출 이전에 일반 학술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주 저자이거나 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 이내의 연구논문에 한한다.<신설 2011. 3. 1>

2. 석사학위과정

- 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4학기 이상(일반대학원), 5학기 이상(특수대학원)의 등록을 마친 자(비동일계 출신자는 보충과목 9학점 이상 추가 이수자)<개정 2009.8.1>
- 나. 전학기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 다. 논문지도 학점(1학점)을 취득한 자
- 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② [문화관광복지대학원](#)의 특수한 성격을 갖는 학과의 경우에는 졸업작품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졸업작품 제출 자격은 작품지도학점을 취득한 자로 졸업작품 공개전시회의 개최와 졸업논집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개정 2013.1.1., 2013.11.18>

③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학기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논문 및 작품지도교수)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0.3.1>

② 상기 ①항 이외의 자로서 논문을 제출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학계의 권위자인 경우에는 학과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0.3.1>

③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3.1><개정 2009.8.1, 2010.3.1>

④공동지도의 경우 정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교원이어야 하며, 공동지도할 수 있는 외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8.1, 2010.3.1>

⑤지도교수는 2학기초 1개월 이내에 학과(전공)장의 제청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0.3.1>

⑥2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3.1>

⑦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

제4조(논문지도 학생수) 논문(작품)지도교수의 지도 학생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증감 할 수 있다.

제5조(논문지도) ①논문지도 기간은 논문(작품전시)계획서 제출 이후 본심사 완료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논문지도는 매주 2시간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6.3.1>

제6조(논문계획서, 작품전시계획서 발표 및 심사) ①논문(작품전시)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3학기(일반대학원), 4학기(특수대학원) 시작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논문(작품전시)계획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장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심사하되 학과(전공)장이 지도교수일 경우에는 소속 교수 1인이 심사하여야 한다.

③논문(작품전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논문제목
2. 문제의 제기(필요성, 연구과제, 목적)
3. 이론적 배경 및 근거
4. 가설
5. 연구방법
6. 기대되는 효과
7. 참고문헌 등

④ 논문계획서 발표 이후 논문지도 중 논문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미한 내용은 지도교수가 심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논문(작품전시)계획서 심사에 합격하면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지도교수는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논문(작품전시)계획서발표 결과를 즉시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발표 및 공개작품전시회) ①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기초 1개월 이내에 공개발표(공개 작품전시회)를 하여야 하며, 공개발표(공개작품전시회)에 통과한 자는 논문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되 논문계획서 심사위원은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도교수는 공개발표(공개작품전시회) 종료 후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구성) ①심사위원 구성은 박사학위과정은 5명, 석사학위과정은 3명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학과(전공)장과 협의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인사는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

③석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인사는 1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단, 학문 연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학위 소지자나 논문을 제출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학계의 권위자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8.1, 2010.3.1>

④지도교수와 외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논문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심사위원이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장의 권한) ①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사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임무) ①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참고문헌 및 논문체제 등을 심사하고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타인에 의해서 발표된 적이 있는지, 이미 발표된 논문 부분이 청구논문에 삽입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발표 신청 및 발표) ①논문(졸업논집)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논문발표는 심사위원, 학과(전공)교수 및 관련 전공분야 연구자들이 참석 하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 졸업논집의 심사 순서) 석사학위과정은 예비 심사, 본 심사(구술심사 포함)순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은 예비 심사(1차 및 2차), 본 심사(구술심사 포함)순으로 실시한다.

제13조(예비심사) ①논문(졸업논집)발표자는 예비심사 1주일 전에 심사용 논문 또는 졸업논집(석사 3부, 박사5부)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 문헌 등을 논문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예비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통합하여 논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예비 심사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에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속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6.3.1>

⑤학위과정별 심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논문내용의 학술적 가치

나. 논리적인 전개의 타당성

다. 내용의 창의성 여부

라. 이미 발표된 논문부분의 삽입 여부

마. 수정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

2. 박사학위과정(1차 예비 심사는 석사학위과정 심사내용에 준하며, 2차 예비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정 보완 이행 여부

나. 논지의 명확성

다. 논문체제의 적합성

라. 참고문헌 활용

마. 모든 인용문 확인 등

제14조(본심사) ①논문(졸업논집) 발표자는 본 심사 1주일 전에 예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심사용 논문 또는 졸업논집(석사 3부, 박사 5부)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심사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수정 보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본 심사는 반드시 구술심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구술심사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내용과 전공지식 및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본 심사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에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 일정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 교수 회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6.3.1>

제15조(심사결과 보고) ①본 심사(구술심사 포함)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과(전공)장을 경유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이를 졸업사정을 위한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은 심의용 완성 논문 3부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 중에서 위촉한 별도의 논문심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작성 언어) 논문(졸업논집)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문의 성격상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본심사 평가) ①본 심사(구술심사 포함)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은 2명, 박사학위과정은 4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종합평가 하되 종합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1. A등급(95점 이상) : 최우수논문
2. B등급(90점 이상) : 우수논문
3. C등급(80점 이상) : 보통논문
4. D등급(79점 이하) : 불합격

제18조(논문, 졸업논집의 재심사) 논문(졸업논집)의 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우수논문 포상) ①우수논문(졸업논집)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우수논문심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제20조(논문, 졸업논집의 제출) 본 심사에 최종 합격하고 학위수여가 결정된 자는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 1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1. 학위청구논문(학위청구졸업논집) 제출신청서
2. 학위논문(졸업논집) 6부(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
3. 학위논문(졸업논집)이 수록된 디스켓 1부

제21조(논문, 졸업논집 체제) ①논문의 구성과 내용, 형식은 별도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②졸업논집의 제작형식은 일반논문집에 준하되 전시회에 발표된 작품은 사진형태로 인화하여 15매 이상 30매 이하를 신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련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심사 관련 사항은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장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는 년 2회로 하되 2월과 8월 중에 행한다.

제3조(학위수여자격) 학위수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일반대학원 4학기, 특수대학원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마. 특수대학원의 비논문학위 취득자는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신설 2008.3.1>

2. 박사학위과정

가.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제4조(학위수여결정)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6조(학위수여취소)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명예박사학위수여 절차) ① 대학원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한다. <개정 2008.3.1>

② 명예박사 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개정 2008.3.1>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여 여부는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8.3.1>

④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8조(학위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2-2-9~2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위수여와 취소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명예박사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개강좌및연구생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에 대한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강좌)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장이 개설할 수 있다.

제3조(개설 계획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3.1>

1. 공개강좌명
2. 목적 또는 필요성
3. 학급 편제 및 정원
4. 담당교수명
5. 기간 및 강의시간표
6. 이용되는 교육시설
7.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8. 이수 사정기준
9. 기타 필요사항

제4조(수료증)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징수) 공개강좌 수강자에게 강좌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 비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설치하며 이 과정의 학생을 각각 연구생 또는 특별연구생이라 한다.

제7조(연구생의 수업연한) 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연구생의 수료학점) 일반대학원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의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특수대학원 연구과정의 수료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9조(연구생의 등록) 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학위 과정의 80%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증명서)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생의 신분) 연구생 및 특별 연구생에게는 학생증이 발급되며 재학생과 동등한 시설 이용권이 부여된다.

제12조(연구생 제적) 연구생 및 특별연구생이 자격미달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소속 대학원장은 등록 취소 및 제적을 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에 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지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0조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칙준수) 학생은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에 정진하고 대학원생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3조(취업보고) 학생은 졸업 시 취업상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 학생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전공분야에 관계되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단체활동) 연구활동과 친목을 위한 모임을 만들 수 있으나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징계) 학생의 신분이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하고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 장학금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의 장학금 종류 및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5.3.1, 2006.3.1, 2008.3.1, 2010.3.1, 2010.6.1, 2011.7.1, 2012.6.1, 2013.1.1, 2013.6.1., 2013.9.1., **2017.2.14**>

장학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기간	지급범위
성적우수장학금	재학중 대학원별 직전 학기 성적이 1위인 자	수업료의 50%	해당학기	석사학위과정
면학장학금	입학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 (편입생제외) 재학중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편입생제외)	수업료의 30%	해당학기	석·박사학위과정
본 교 출 신 자 장 학 금	본교 출신자 중 입학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 및 재학중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수업료의 50%	해당학기	석사학위과정
동일재단출신자 장학금	동일재단 출신자중 입학시 입학전형점수가 70/100점 이상인 자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이3.0이상인 자	수업료의 50%	해당학기	석사학위과정

※ <삭제 2011.7.1>>

※ 성적우수장학금은 대상자가 2개 학과(전공) 또는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과장이나 전공주임교수간 협의하여 추천함. <신설 2005.3.1>, <개정 2010.6.1>

※ 삭제<2011.7.1.>

※ “가계곤란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학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9.1>

제3조(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개인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장학금액 및 지급내용 등은 개인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발방법) 신입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재학생은 수혜자격이 되면 별도 심의 없이 자동 선발된다.

제5조(지급방법) ①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등록 시 납입금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교외장학금은 본교 행정총괄지원팀에 입금 시킨 후 지급한다. <개정 2009.12.1>

제6조(수혜기간) 수혜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편입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수혜조건) 재학 중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특별장학금) 수상자, 표창자, 공로자 등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중복금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복 지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교외 장학금은 제외한다.

제10조(연구비 지급) 각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에게 교내 또는 교외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1.7.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변경된 장학금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으로 학생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변경된 장학금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변경된 장학금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변경된 장학금은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에 관한 규정 2-2-1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전공)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 제2항의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장의 선정) 학과(전공)장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학과장의 임무) 학과(전공)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과(전공) 학생들의 지도 및 감독
2. 교과과정 운영
3. 논문지도교수 선정
4. 학생들의 등록 및 학적변동에 관한 지도
5. 타 학과(전공)와의 협조
6. 조교에 대한 지도감독
7. 학점에 대한 지도 및 확인
8. 학위논문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의 지도 및 확인
9. 학생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10. 기타 학과(전공) 관련 업무

제4조(학과교수회의) ①학과(전공)장은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학과(전공)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②학과(전공)장은 학과(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학칙 및 제규정 범위 안에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되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대학원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기획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기획위원회의 위원은 발전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입학처장, 사무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학술정보원장, 정보전산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2인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간사는 대학원 교학과 직원이 된다.

④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자체평가 기본방향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전체 구성원들에 대학원자체평가 중요성 및 인식고취
3. 대학원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심의
4. 대학원자체평가 총장 결과보고 및 개선 건의

제4조(연구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위원장은 기획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대학원 교학과 직원이 된다.

⑤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자체평가의 분야별 연구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2. 대학원자체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3. 대학원자체평가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담당영역별 연구
4. 대학원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집필

제5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자체평가 관련부서의 장 또는 실무직원으로 기획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간사는 대학원 교학과 직원이 된다.

⑤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자체평가 실시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2. 대학원자체평가에 관련된 제반자료 생성 취합 및 제공
3. 대학원자체평가 실무행정지원

4.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집필 지원

제6조(연구위원 대우) 총장은 연구위원인 교수의 활동내용을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비 및 수당) ①각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에게는 연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비 및 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기획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를 대표하며 연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연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기획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기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경주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원 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원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 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지기) 대학원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지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평가기구

제7조(평가관) ① 대학원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관을 둔다.

② 평가관은 대학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역량 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원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④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는 대학원 교학과에서 담당한다.

제8조(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 ① 대학원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9조(평가계획 수립) 대학원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계획을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학과)과 행정부서에 통지한다.

제10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각 대학원 및 행정부서는 대학원 교학과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1조(평가실시) ① 대학원 교학과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실사) 자체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대학원 및 행정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보고) 평가관은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와 각 대학원 및 행정부서의 서류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

③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④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심사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대학원생이 학사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9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원 구성원의 책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제13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권리장전은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